

【제2장 입소계약】

제1조 (계약기간) 계약 기간은 각호와 같다.

- ① 계약 기간은 서비스 시작일을 기준으로 표준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.
- ② 제1항은 센터와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재계약은 당사자와 협의에 따라 결정하며 재계약 일자 는 장기요양등급 갱신일로 한다.

제2조 (계약목적) 센터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센터와 계약당사자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다.

제3조 (월이용료)

- ① 월이용료는 아래 **별지1호서식**과 같다.
- ② 15일 이상의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상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%를 청구할 수 있다. (적용은 평일 월 ~ 금요일을 기준으로 한다)
- ③ 이용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**별지2호서식**에 의거 세부 이용료 고지서를 통보한다.
- ④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15일에 납부한다. 단 납부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로 한다.
- ⑤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 **별지3호서식**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.

제4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)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(보호자)을 지정하며,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(보호자)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항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1)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
- ② 이용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- ③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, 가족간담회, 상담(방문, 전화)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,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④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⑤ 기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의무

2)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① 이용자로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정보 제공
- ②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
-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
-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
- ⑤ 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
- ⑥ 기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의무

제5조 (계약의 해제)

- 1) 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.
- 2) 이용자에게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①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등급이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
 - ② 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』에 따른 감염병 위험성이 있는 경우
 - ③ 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(단체활동)이 어려운 경우
 - ④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
 - ⑤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통보 없이 급여서비스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
 - ⑥ 서비스 이용료가 3회 이상 미납되었을 경우
 - ⑦ 건강정보 및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
 - ⑧ 입소계약 후 2주간 적응 기간을 두고 관찰하며 센터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(단체활동 및 공익을 저해하는 요인, 센터 부적응 등)
- 3)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.
 - ①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
 - ②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
 - ③ 병원 장기입원으로 인해 서비스 미이용이 10일 이상일 경우
 - ④ 장기요양인정등급이 변동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원칙으로 함
 - ⑤ 제5조 (계약의 해제) 2항과 관련하여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 내용을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한다.